

분류기호
문서번호
방법 자료기공 특집 회견(설명)
과경 국징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주개30313 - 714 (전화번호 731-6392) 전결규정 4조1항 국장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행일자 '85.
보존연한 준영구

시 장
1985. 4. 30
결재
1985. 4. 30
건설기획국장

보조기관 건설관리국장 전결
주택개발국장
개발기획장

법무담당관 심사필
(고시안심사)
개발기획국장

기안책임자 남궁택 '85.

경유 수신 참조
관안참조
발수통
1985. 5. 01
검인
1985. 5. 01

제목 주택개발 재개발구역 지적승인

(제 1 안) 내부결재

1. 건설부고시 제125 ('85. 3.28)로 주택개발 재개발구역 결정된 방배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별첨 고시안 및 도시와 같이 지적승인 고시하고자 합니다.

(제 2 안) 고시안

법무심사 1985. 4. 29
담당자 법제처장 법무담당관
신선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주택개발 재개발구역 지적승인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125호 ('85. 3.28)로 주택개발 재개발구역 결정된 방배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발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와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서울특별시

가. 지적승인 고시내역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방배제1	강남구 방배동 2525일원	30,000	건고시 제125호 추석경장
나. 도면 및 조서 별첨 (생략)			
(제 3 안)			
수신 건설부장관			
참조 도시개발과장			
제목 주택개발 재개발구역 지적승인 고시			
<p style="text-align: right;">결재</p> 1. 건설부 고시 제125호 ('85. 3.28)로 주택개발 재개발구역 지정된 방배제1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지적승인 고시하였거 보고합니다.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도면 1부.			
(제 4 안)			
수신 총무차장관 (공보관)		발신 시(국)장	
제목 관(시)보 게재 의뢰			
1. 주택개발 재개발 방배제1구역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고시하였거 관(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 각1부.			
(제 5 안)			
수신 강남구청장			

주 계30313 -

참조 주택, 도시정비과장
제목 같은건
1. 건설부 고시 제125호 ('83. 3.28)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결정된 방배제1구역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과 같이 지적승인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2. 관할구청장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도시계획확인증 원발급에 착질이 없도록 함 것이며,
3. 본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과구역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속하 고도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함 것.
(제 6 안)
수신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장
제목 같은건
1. 건설부 고시 제125호 ('85. 3.28)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결정된 방배제1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거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지적승인 고시하였기 통보합니다.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도면 1부. 같.

1205-25(2-2) (을)
1981. 12. 18순인

-1246

190mm x 268mm (인쇄용지 2급 60g/㎡)
가 33 - 41 1984. 7. 30.

宇
田
町
図

421062
84 5 24

